## 「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」 정오표

('21.2.19, 인구정책총괄과)

| 페이지 | 기존   | 수정  | 비고                  |
|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라. 설치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별도 발급   | 라. 설치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별도 발급                      | * 「2021년 사회복지       |
|     | …(이하 생략)…  | …(이하 생략)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 관리안내」개정<br>사항 반영 |
|     |  | 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,「법인세법」             | 716 26              |
|     | 투명성을 위해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 |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을 발급 받아이하므로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이를 적용  | <u>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*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는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 법인이 설치·운영(수탁 포함)하는 시설의 경우 "법인명(단체명)"에 법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 | 인명칭을 기재하거나 법인명칭과 시설명칭을 병기하는 형태 등으로 고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34p | *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접수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 | 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 발급을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음(권고사항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므로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시설별로 별도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함   | TII.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<ul><li>●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상 명의는 반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 확인증에 표시된 명의와 동일해야 함   | TII.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◎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로 해당시   | <u> </u>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을 발급 받아야함<br>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…(이하 생략)…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●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, '19.12<br>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·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고,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'21.7월부터 적용할 것(「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p.13 개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항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…(이하 생략)…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*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|                     |

| 페이지  | 기존  | 수정  | 비고 |
|------|---|---|----|
| 124p | <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| · 센터장(8시간) 1인: 2,22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센터장(8시간) 1인: 2,22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| - <u>1,875,000원(월 지급액)</u>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 | - <u>1,873,800원(월 지급액)</u>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 |    |
|      | · 시간제 돌봄선생님(4시간) 1인: 1,100,000원                   | · 시간제 돌봄선생님(4시간) 1인: 1,100,000원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| - 929,000원(월 지급액)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          | - <u>928,500원(월 지급액)</u>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   |    |